

生活保護のしおり 생활보호 안내

このしおりは、生活保護のあらましをわかりやすく書いたものです。お読みいただき、わからないことがあれば、福祉事務所でたずねてください。

이 안내는 생활보호의 개략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고 모르는 점등이 있으면, 복지사 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福祉事務所

복지사무소

1. 生活保護とは

生活保護は、生活に困っている世帯の最低限度の生活を、法律にもとづいて保障することによって、一日も早く自分の力で生活できるように手助けをする制度です。

생활보호란

생활보호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하는 것으로써, 하루빨리 자기의 힘으로 생활 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2. 生活保護を受ける前に

- (1) 働ける人は、能力に応じて働いてください。
- (2) 保有を認められない不動産、預貯金 生命保険、自動車などの資産は、処分して生活のために活用してください。
- (3) 親、子、兄弟などから、できるだけ援助を受けてください。
- (4) 年金、児童扶養手当などの社会保障で、受けられるものは、すべて受けてください。

생활보호를 받기 전에

- (1) 일할 수 있는 분은, 능력에 맞추어 일 해 주십시오.
- (2) 소유가 인정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 예금, 생명보험, 자동차등의 자산은, 처분하여 생활을 위해서 활용해 주십시오.
- (3) 부모, 자녀, 형제등의 원조를 되도록 받도록 해 주십시오.
- (4) 연금, 아동부양수당등 사회보장제도중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받도록 하십시오.

3. 保護を受けたときの権利

- (1)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保護費を減らされたり、保護を止められたり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 (2) 生活保護で受けた現金や品物を差し押さえ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 (3) 生活保護で受けた現金や品物には税金がかかりません。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의 권리

- (1) 正当한 이유 없이, 보호비가 감액되거나, 보호가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 (2) 생활보호로 받은 현금이나 물건을 압류당하지는 않습니다.
- (3) 생활보호로 받은 현금이나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4. 保護を受けたときの義務

- (1) 働ける人は、能力に応じて働いてください。そして計画的な暮らしをしてください。
- (2) 次の場合は必ず届け出てください。
 - ア 住所や家賃、地代が変わるとき。
 - イ 仕事や収入（給与、年金など）が変わったとき。
 - ウ 転入、転出、死亡などで家族の人数が変わったとき。
 - エ お医者さんなどにかかるときや、入院や退院したとき。
- (3) 福祉事務所の指導、指示 福祉事務所の指導、指示には従ってください。従わないときは、保護が受けられなくなる場合があります。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의 의무

- (1) 일할 수 있는 분은, 자기 능력에 맞추어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적인 생활을 해 주십시오.
- (2)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 가. 주소나 집세, 땅의 임대료가 변경될 때
 - 나. 일이나 수입(급여, 연금등)이 달라졌을 때
 - 다. 전입, 전출, 사망등으로 식구수가 달라졌을 때
 - 라. 의사등의 진료를 받을 때나, 입원이나 퇴원을 했을 때
- (3) 복지사무소의 지도, 지시 복지사무소의 지도, 지시에는 반드시 따라 주십시오. 따르지 않을 때는, 보호를 못 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5. 福祉事務所の調査・通知

手続きをすると、お住まいや入院先の病院などを訪問し、原則として14日以内に保護が必要かどうかを決定します。

- (1) 保護が受けられる場合
保護費の金額や支払日を書いてある「保護決定通知書」を送ります。
- (2) 保護が受けられない場合
保護を受けられない理由が書いてある「却下通知書」を送ります。

복지사무소의 조사·통지

수속을 하면, 사는 곳이나 입원중인 병원을 방문해, 원칙적으로 14 일 이내에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호비의 금액이나 지불일이 적혀 있는 「보호결정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2)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적혀 있는 「각하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6. 保護の種類

生活保護には次の種類があり、必要に応じて支給されます。

- (1) 毎月支払われるもの
 - ア 生活扶助・・・食費、衣料費、光熱水費など基本的な生活費
 - イ 住宅扶助・・・家賃や地代など
 - ウ 教育扶助・・・中学校卒業までに必要な、給食費、教材代、学用品代など
- (2) 直接お医者さんや介護サービス業者などに支払われるもの
 - ア 医療扶助・・・医療費、治療材料費や施術料、看護料あるいは移送費など
 - イ 介護扶助・・・介護保険を利用したときの介護費
- (3) 一時的に支給されるもの（事前に相談が必要です）
 - ア 出産扶助・・・出産の費用
 - イ 生業扶助・・・技能修得の費用、就職の支度費用など
 - ウ 葬祭扶助・・・葬祭に要する費用
 - エ その他・・・おむつ代、炊事用具等の費用や入学準備金、病院等への交通費、転居費用など

보호의 종류

생활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급됩니다.

- (1) 매월 지불되는 것
 - 가 생활부조・・・식비, 의료비, 광열비나 수도비 등의 기본적인 생활비
 - 나 주택부조・・・집세나 땅의 임대비등
 - 다 교육부조・・・중학교 졸업까지에 필요한, 급식비, 교재비, 학용품비등
- (2) 직접 의사나 개호서비스업자들에게 지불되는 것
 - 가 의료부조・・・의료비, 치료재료비나 시술료, 간호료 혹은 이송비등
 - 나 개호부조・・・개호보험을 이용했을 때의 개호비
- (3)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 출산부조・・・출산비용
 - 나 생업부조・・・기능습득에 필요한 비용, 취직시의 준비비용등
 - 다 장례부조・・・장례를 치를 때에 필요한 비용
 - 라 기타・・・기저귀나 취사용구 등에 대한 비용이나 입학준비금, 병원등에의 교통비, 이사비용등

7. 保護を受けられる基準

生活保護の額（最低生活費）と、世帯の収入をくらべて、収入が最低生活費以下の場合に不足額を支給します。
（負債の返済は認められませ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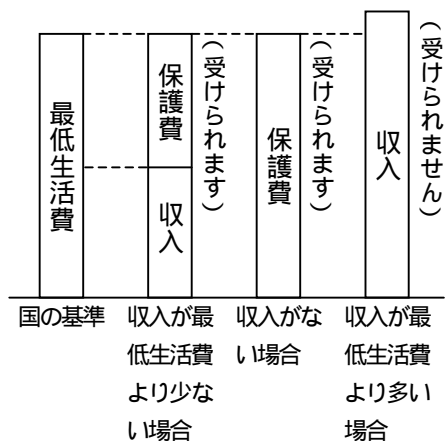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기준

생활보호의 액(최저생활비)과, 세대의 수입을 비교해서, 수입이 최저생활비 이하일 경우에는 부족액을 지급합니다.
(빚을 갚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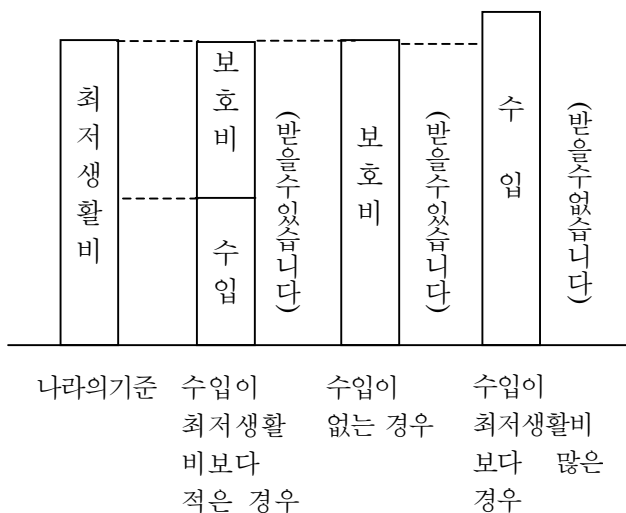
8. 保護費の仕組み

보호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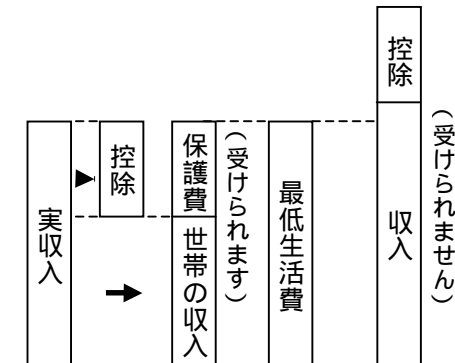
- (1) 年金、仕送りなどの収入の場合
収入が、最低生活費を下まわった
場合に保護が受けられ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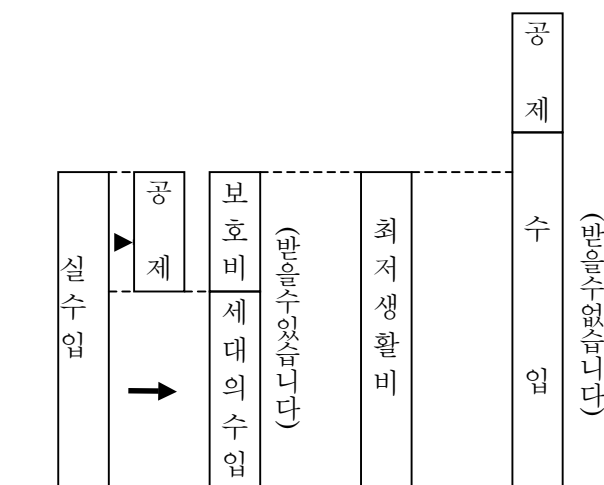
- (1) 수입이 연금, 연고자로부터의 송금등일 경우
수입이 최저생활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 (2)働きによる収入の場合
収入から控除を引いたものが、最低生活費を下まわった場合に保護が受けられます。



- (2) 자기가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수입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최저생활비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医療費が支払えない場合
収入が最低生活費より多いが、医療費が支払えないときには、保護が受けられる場合もあります。この場合、医療費の一部をお医者さんに、支払っ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くわしくは、福祉事務所で相談してください。

- (3)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수입이 최저생활비보다 많더라도,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의료비의 일부를 의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9. あなたの世帯の場合

귀하의 세대의 경우는

(1) 최저생활비

(1) 最低生活費

생활부조기준(1 류)
生活扶助基準 (1 類)

생활부조기준(2 류)
生活扶助基準 (2 類)

가산()
加算 ()

엔
円

+

엔

+

엔

주택부조기준
住宅扶助基準

교육부조기준
教育扶助基準

의료부조기준
医療扶助基準

+

엔

+

엔

+

엔

=

엔

(2) 세대의 수입

(2) 世帯の収入

수입(과거 3 개월평균)
収入 (過去 3 ヶ月平均)

실비공제
実費の控除

근로공제
勤労控除

엔
円

-

엔

-

엔

=

엔

(3) 생활보호비

(3) 生活保護費

최저생활비
最低生活費

세대의 수입
世帯の収入

생활보호비
生活保護費

엔
円

-

엔

=

엔

10. 保護費の支払い

보호비의 지불

生活保護は、原則として月はじめに、指定された銀行に振り込まれるか、福祉事務所で支払われます。

ただし、最初の支払いの時や、特別な場合には、福祉事務所で支払われます。入院中の方には、送金することもできます。

생활보호비는, 원칙적으로 월초에 지정된 은행계좌로 송금되든지, 복지사무소에서 지불됩니다. 단 첫번째 지불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복지사무소에서 지불됩니다. 입원중인 분에게는, 송금도 가능합니다.

11. 保護費の返還

보호비의 반환

資力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保護を受けたときなど、本来受けるべきでなかった保護を受けたときは、福祉事務所が決定した額を返していただきます。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았을 경우등, 원래 받아서는 안되는 보호를 받았을 경우는, 복지사무소가 결정한 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2. 不正受給

부정수급

不正な方法で保護を受けたときは、支給した金額を返していただきます。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았을 때는, 지급된 보호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13. 不服のあるとき

승복못할 경우

申請の却下や保護の変更、停止、廃止の決定について、疑問がある場合には、直接福祉事務所に説明を求めてください。

신청 각하나 보호 변경, 정지, 폐지 결정 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복지사무소에 설명을 요구하여 주십시오.

14. 病氣になったとき

병을 앓게 되었을 때는

まえもって福祉事務所で手続きをしてから、生活保護法指定のお医者さんに行ってください。

なお、休日や夜間などで、手続きができないときは、生活保護医療受給者証を持って受診してください。その後、できるだけ早く福祉事務所に連絡してください。

미리 복지사무소에서 수속을 한 뒤에 생활보호법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찾도록 하여 주십시오.

단, 휴일이나 야간등, 수속을 못할 경우에는, 생활보호 의료수급자증을 지참해서 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나중에 되도록 빨리 복지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1) 国民健康保険証は使えなくなりますが、福祉事務所の担当に必ずわたしてください。

* (1) 국민건강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복지사무소 담당자에게 반드시 반환하여 주십시오.

(2) 健康保険証(社会保険)は、そのまま使えます。
なお、自己負担は福祉事務所で負担します。

(2) 건강보험증(사회보험)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은 복지사무소가 부담합니다.

15. 保護費以外に受けられる主なもの

보호비 외에 받을 수 있는 주요한 것

- 住民税の減免
- NHK受信料の減免

* くわしくは福祉事務所でおたずねください。

- 시민세, 현민세, 상하수도료, 시교통재해공제의 부금감면
- NHK 수신료 감면

* 상세한 것은 복지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16. 相談の受付

상담 접수

相談の受付は次のとおりです。

상담 접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月曜日～
金曜日

午前8時30分から
午後5時まで
(正午から午後1時
までは除く)

월요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

* 相談内容の秘密はかたく守りますので、お気軽にご相談ください。

* 상담내용에 관한 비밀은 반드시 지키므로, 부담갖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17. 福祉事務所一覧表

복지사무소 일람표

복지사무소명 福祉事務所名	〒	소재지 所在地	전화(대표) 電話(代表)
羽村市福祉事務所	205-8601	羽村市緑ヶ丘五丁目2番地1	042-555-1111

귀 세대의 담당은 _____ 입니다.

あなたの世帯の担当は、 _____ です。

귀하가 사는 지구의 민생위원은 _____ 씨 입니다.

あなたの地区の民生委員は、 _____ さんです。

주소

住所 _____

(☎ -)